

2000. 4. 29(토)  
제5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

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회 운영 위원회

## 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및발의자 : 2000. 4. 21 조병석 의원외 3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4. 24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4.28(제59회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조병석 의원)

#### 가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상 용어를 통일 정비코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##### ○ 용어의 정비

-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“수당”으로
- 국내 여비규정을 “공무원여비규정”으로

##### ○ 수당의 현실화

- 당초 1일 5만원에서 → 의원 회기수당(현 7만원)과 동일하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길석)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상 용어를 통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규적 ·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# ○ 법규적 검토

-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용어가 “국내여비규정”에서 “공무원여비 규정”으로 조정되고 민간인도 이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며,

- 잠시 출석하는 위원과는 달리 2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활동을 벌이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여비를 제외하고는 일비보다 수당적 성격이 강하여 다른 용어와 통일시켜 “수당”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음

### ○ 행정적 검토

- 사회에서의 직무상 전문가인 회계사·세무사 등의 1일 수 시간 활동댓가가 5만원밖에 되지 않음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희망하는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바, 다소나마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의원 수준으로의 수당을 개정함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 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## 7. 심사 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. 끝.